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
----------	------

발의연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강선우 · 권철승 · 최인호
김진표 · 이수진 · 신동근
서영석 · 전용기 · 우원식
허 영 · 홍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5항) 중 “조치를”을 “조치, 사업비 환수 또는 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10항”으로, “환수”를 “환수, 제재부가금의 금액”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8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

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를 “참여제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⑩ -----
-----조치, 사업비 환수 또는 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기
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
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⑩ -----제10항-----
-----환수, 제재부가금의 금액-----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참여제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1의2. ~ 6. (생략)	----- 1의2. ~ 6. (현행과 같음)
----------------	-----------------------------